

2022년 보훈문화의식실태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-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,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

2. 위탁기관

- 국가보훈처(선양정책과)

3. 법적근거

- 조사 실시

「국가보훈법」 제16조(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)

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,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「국가보훈법」 제22조(보훈문화 창달의 노력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통계 대행

「통계법」 제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

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4. 조사대상 및 규모

- (조사대상)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
- (조사규모) 1,710가구 내외

5. 조사내용

- 보훈이해, 보훈태도, 보훈행동, 보훈관련 사회규범, 보훈정책이해 등

6. 조사방법 및 기간

- (조사방법)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, 필요 시 자기기입식 병행
- (기준시점) 2022. 3. 30. 0시
- (조사기간) 2022. 3. 30. ~ 4. 8.(10일간) * 준비조사: 3. 29.(1일)

7. 표본설계

- (모집단 및 표본추출틀)
 - 목표모집단: 조사기간 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
 - 표본추출틀: 2019년 기준 가구부문 등록기반 표본추출틀
 - 목표모집단에서 섬지역 및 소규모 가구, 사용조사구를 제외
 - 행정구역(읍면동) 경계를 이용하여 평균 60명 내외가 되도록 조사구 단위로 통합
- (추출방법) 층화 2단 집락추출(Stratified Two-stage Cluster Sampling)
 - 1단(조사구): 설계층별 확률비례계통추출(MOS=가구수)
 - 2단(가구):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단순임의추출(시작가구)
 - 분류지표: 동/읍면부, 조사구 특성, 대졸 이상 인구, 65세 이상 인구, 유배우 인구

8. 조사체계

